

# 2026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1차 기간제 근로자(휴직대체인력) 채용공고

농수산물산업 강국 실현으로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사,  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1월 6일  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## 1. 채용개요

채용 직무	채용 분야	채용 인원	담당 업무	근무 기간	근무지
일반 행정 지원	나주	17	행정 업무 보조	'26. 2. 10. ~ '27. 1. 31. (약 12개월)	나주(본사 및 사업소)
	대전	2			대전(대전충남지역본부)
	광주	1			광주(광주전남지역본부)
	대구	2			대구(대구경북지역본부)
	인천*	1			인천(인천지역본부)
	전주*	2			전주(전북지역본부 및 전주비축기지)
	창원	1			창원(경남지역본부)
합 계		26			-

- \* 근무 시작일자 및 근무 부서·담당업무는 기관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전형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/ 휴직자 등의 신분 사항 변동에 따라 근무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
- \* (인천) 통관 및 정선 업무 수행에 따른 정기적 현장 출장업무 포함(주 3회 내외, 공사차량 지원 가능)
- \* (전주) 전북지역 수출지원(현장 실사 및 선별장 점검 등), 민간창고 점검 등 출장 업무 포함(공사 차량 지원 가능)

## 2. 근무조건

구 분	일반 행정 지원
고용형태	기간제 근로자 * 근무(계약)기간은 채용개요 참고
근로시간	1일 8시간(9~18시), 주 5일(월~금) 40시간 근무
연봉	30,578천원(월 급여액 : 2,548,160원)
성과급	성과연도 월기본연봉 기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

구분	일반 행정 지원	
근무지	나주	aT본사(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) 및 사업소(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27)
	대전	aT대전충남지역본부(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)
	광주	aT광주전남지역본부(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, 1층)
	대구	aT대구경북지역본부(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, 18층)
	인천	aT인천지역본부(인천광역시 중구 신흥3가 7-241 정석빌딩 신관 608호)
	전주	aT전북지역본부(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, 서광비딩 601호) 및 전주비축기지(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)
	창원	aT경남지역본부(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, 오피스프라자)

### 3.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#### □ 지원자격

\* 모집부문별 중복지원 불가

자격 구분		내용
공통 자격요건	기본자격	○ 성별, 학력, 전공, 경력 등 제한 없음 ○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, 공사 채용절차 수행 가능한 자
	연령	○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(60세) 미만인 자
	기타	○ 공사 인사규정 제7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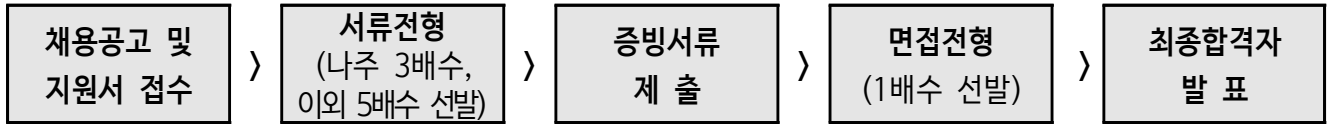
#### □ 우대사항

우대대상	적용전형		우대사항 (만점기준)	부여기준
	서류	면접		
장애인	중증	○ ○	15%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
	경증	○ ○	10% 가점	
취업지원대상자 (국가유공자 등)	○	○	5% 또는 10% 가점	관련 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의사상자	○		10% 가점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
저소득층(본인/자녀)	○		5% 가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(본인/자녀)
북한이탈주민(본인/자녀)	○		5% 가점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(본인/자녀)
다문화가족 자녀	○		5% 가점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
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	○		5% 가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경력단절여성(1년 이상)	○		5% 가점	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- 여성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, 접수마감일 기준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
자립준비청년	○		5% 가점	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,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

\* 우대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적용

\*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에 대한 가점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

## 4. 채용절차



## 5. 채용일정

구분	세부 일정	비고
채용공고 및 지원서접수	'26. 1. 6.(화) ~ 1. 21.(수) 16시	14일 이상 공고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6. 1. 27.(화)	채용예정인원의 3~5배수
증빙서류 제출	~ '26. 1. 30.(금) 16시	
면접전형	'26. 2. 2.(월) ~ 2. 5.(목) 중	
최종합격자 발표	'26. 2. 5.(목)	채용예정인원의 1배수
인사발령 및 부서배치	'26. 2. 10.(화)	

- \*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배치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\*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되는 기한 내 임용정보 미제출 시 합격 취소됨

## 6. 지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

- 접수기간 : '26. 1. 6.(화) ~ 1. 21.(수) 16시 00분
- 접수방법 : 공사 채용 홈페이지(atrecruitment.recruiter.co.kr)를 통해 제출
- 유의사항
  - 지원서는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능
  -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사지원서 상 기재 착오·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
## 7. 채용 전형별 세부 내용

구분	세부 내용
서류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발인원 : (나주)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, (이외 근무지)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</li> <li>○ 평가내용 : 공사 인재상 및 직무능력 기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</li> <li>○ 합격자 결정기준 : 최종평가점수(서류평가점수 + 가점) 고득점자 순</li> <li>○ 동점자 처리기준 : 동점자 전원 면접 응시기회 부여</li> <li>○ 과락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서류평가점수(가점 제외) 60점 미만인 경우</li> <li>- 입사지원서 등 작성 불량*인 경우</li> </ul> </li> <li>* 작성불량 :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과 무관한 내용 또는 특수기호 반복 사용, 사명 오기재 (타사명 기재), 동일 작성 내용의 반복, 자기소개서 항목 1가지 이상 미기재</li> </ul>
면접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발인원 :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</li> <li>○ 면접장소 : 비대면 화상면접</li> <li>○ 평가항목 : 직무적합성, 조직적응력, 태도 및 성품 등에 대한 종합평가</li> <li>○ 합격자 결정기준 : 최종평가점수(면접평가점수 + 가점) 고득점자 순</li> <li>○ 동점자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업지원대상자 → 장애인 → 면접전형 평가요소 중요도 순 → 서류전형점수 순</li> </ul> </li> <li>○ 과락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접평가점수(가점 제외)가 60점 미만인 경우</li> <li>-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·변조로 판명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
## 8. 증빙서류 제출

- 제출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- 제출기간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~ '26. 1. 30.(금) 16시까지
- 제출방법 : e-mail 제출 / hrteam@at.or.kr

구 분		증빙서류
우대사항 해당자	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인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 등 불인정</li> <li>-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'정부24(www.gov.kr)'발급서류</li> </ul> </li> <li>○ 중증장애인인 경우,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</li> </ul>
	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유공자증 불인정</li> <li>-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'정부24(www.gov.kr)'발급서류</li> </ul> </li> </ul>
	의사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 법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</li> </ul> </li> </ul>
	저소득층 (본인/자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</li> <li>- 자녀인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1부</li> <li>-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'정부24(www.gov.kr)'발급분</li> </ul> </li> </ul>
	북한이탈주민 (본인/자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만 해당</li> <li>- 자녀인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1부</li> <li>-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'정부24(www.gov.kr)'발급분</li> </ul> </li> </ul>
	다문화가족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문화가족 자녀 증빙서류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(상세) 1부</li> <li>*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</li> <li>-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1부</li> <li>- 가족관계증명서 1부(자녀관계 확인용)</li> <li>-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'정부24(www.gov.kr)'발급분</li> </ul> </li> </ul>
	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한정</li> <li>-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'정부24(www.gov.kr)'발급분</li> </ul> </li> </ul>
	경력단절여성 (1년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등본 1부(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'정부24(www.gov.kr)'발급분)</li> <li>-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</li> </ul> </li> </ul>
자립준비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등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</li> </ul> </li> </ul>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빙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</li> <li>○ 모든 증빙서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</li> </ul>	

\* 증빙서류 미비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재차 미비 시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

## 9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
- 입사 포기, 퇴사,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위·변조로 판명된 경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 인사발령일 6개월 이내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,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 채용
  -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: ~ 2026. 8. 9.(일)
  - 예비합격자 운영 규모 :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응시자 전원
- \* 단, 면접전형 과락대상자는 예비합격자에서 제외

## 10. 블라인드 채용 안내

- 입사지원서 상 사진, 성별, 나이, 학교명, 학점, 주소 등 기재란 없음
-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인적사항(출신학교, 가족관계, 출신 지역, 성별 등) 일체 기재 금지
-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, e-mail 등은 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
## 11. 서류반환신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
구분	주요 내용
청구기간	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
신청방법	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
반환대상	제출된 채용 원본서류
반환제외대상	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,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

## 12. 이의신청 안내

- 접수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
- 접수방법 : 사이트 내 Q&A 게시판 게시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시행

### ※ 이의 신청 처리 예외사유

- 채용 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#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기준 안내

## □ 채용결격사유(인사규정 제7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
7.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병검사,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
9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10~11. (삭제)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
14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제6의3호 및 제6의4호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5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 □ 부정행위자 기준(채용업무시행세칙 제17조)

- ①-1.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(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한 경우도 포함)
  2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3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4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 5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6. 병역, 가점, 어학능력검정시험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-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 2.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 3.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